

문서번호	시설안전팀-4893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6.08.25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팀장	건설안전본부장
전철준	박성규	진결 08/25 김승호
협 조		
감 사	팀장	김진중

**무빙위크 이용자 안전사고 보험심사  
진행에 따른 자기 부담금 지급 계획**

**2016.8**



**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**  
**시설안전팀**

## - 무빙워크 안전사고 관련 보험심사 진행에 따른 - 보험료 자기 부담금 지급 계획

### I 사고 개요

#### □ 사고 현황

##### ○ 그간의 판매동 무빙워크 사고 발생 현황

- ('16.5.9) X10열 **B1F → B2F** M/W 내 미끄러짐(발목 골절)
  - 청과 직판 오픈 이전에 매장 바닥면 일제 물청소 실시 후 발생
- ('16.7.2) X10열 **1F → B1F** M/W 내 미끄러짐(허리 타박상)
  - 수산 직판 바닥면 염분성 물기에 젖은 상태로 보행 중 발생
- ('16.7.9) X10열 **1F → B1F** M/W 내 미끄러짐(허리 타박상)
  - 수산 직판 바닥면 염분성 물기에 젖은 상태로 보행 중 발생
- ('16.7.10) X10열 **1F → B1F** M/W 내 미끄러짐(꼬리뼈 골절)
  - 수산 직판 바닥면 염분성 물기에 젖은 상태로 보행 중 발생
- ('16.7.2) X10열 **1F → B1F** M/W 내 미끄러짐(척추 골절)
  - 수산 직판 바닥면 염분성 물기에 젖은 상태로 보행 중 발생

##### ○ 사고 특징 : 무빙워크내 보행에 의한 미끄러짐이 대부분

- CCTV 영상으로 가동 중인 무빙워크에서 보행 확인
- 견지 말라는 안내요원의 주의 사항을 무시하고, 핸드레일 또한 붙잡지 않고 이동 중 넘어짐

※ 현장에 “물기 주의”, “걸거나 뛰지 마세요” 등의 미끄러짐 방지 안내 문구 부착에도 불구하고, 발생한 사고 건이 대부분

- 주로 가락물 판매동 수산직관 무빙워크(1F→B1F)에서 발생
- 보행 동선상 물기에 상시적으로 오염될 수 밖에 없는 환경 조건

### ○ 현장 조치

- 대부분 사고 당일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2~3일 후 불편 호소
- 현장 CCTV 등의 영상 확보 후 보험사 사고 접수

### ○ 사고 처리 절차

- 승강기 담당 피해자 인터뷰
- 사고 관련 사실 관계 및 현장 자료 확보[CCTV 등]
- 사고 피해자 병원 치료 권고 및 사후 처리 절차 안내
- 보험사 사고 접수
- 책임 보험사 : NH농협손해보험
- 손해 사정인 피해자 면담 및 현장 실사
- 과실 비율 책정 및 손해 배상금 합의

## II 보험심사

### 보험 일반 현황

- 보험사 : NH농협 손해 보험
- 보험기간 : '16.7.1~'17.6.31
- 배상범위 : 재산 종합 위험 및 배상책임위험
  -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
  - 대상 : 판매동 및 테마동 승강기, 엘리베이터, M/W 및 E/S 43[대]
  - ※ 가락물 2관 및 전망대 승객용 제외
  - 보상 한도액 : **1인당/1사고당 5천만원**
  - 자기 부담금 : 시설소유자배상 1사고당/1십만원

□ 지급 보험금 결정

- 손해사정인 현장 조사 및 피해자 인터뷰
- 병원 진단서 등을 참고해 손해사정인 손해 배상금 산정
  - 피해자 과실 비율 산정 및 합의
  - 치료비, 휴업 손해, 통원 교통비, 위자료 등으로 구성
- 손해 보험사 최종 지급 보험금 지급

**III** 행정사항

- 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 부담금 피해자 지급
  - 향후 보험사 보험료 지급 결정시 금회 방침을 근거로 지급
  - **소요 예산 : 100천원/사고 건**

· 재무팀 예산 사용

▶ 예산과목 : 사업비용/영업비용/판매비와관리비/보험료

▶ 예산현황 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배정액	기집행액	금회집행액	배정잔액	예산잔액
보험료	128,317	128,317	43,009	100	85,208	85,208

- 지출방법 : 피해자 개인 통장 입금

첨부 : 보험 증서 1부. 끝.